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보훈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을 위하여 대변인 및 제대군인 일자리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7. 00. ~ 7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조제1항 중 “대변인, 제대군인국장”을 “제대군인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정보화담당관, 제대군인일자리과장”을 “정보화담당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)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	제26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
① 「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3조에서 “국가보훈 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” 란 <u>대변인, 제대군인국장</u> 및 국 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을 말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 <u>제대군인국장</u> ----- ----- -----.
②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을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라 <u>정보화담당관, 제대군인일 자리과장, 국립4·19민주묘지관 리소장</u> 및 국립5·18민주묘지 관리소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 <u>정보화담당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